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임 업 · 산 립 공 익 기 능 증 진 을 위 한
직 접 지 불 제 도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다. 소규모임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임가로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

마.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정함

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사. 지급 제외 예외 조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 양수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함

아.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지 면적·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을 정함

차.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카.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타.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파.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토양 유지·관리, 산지정화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 무준수사항을 정함

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

거.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과 교육 실시기관 등을 정함

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산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산림보호구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를 정함

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육림업 주업기준을 정함

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서.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저. 입목의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수종별 ha당 유지해야 하는 적정 나무그루 수의 기준을 정함

처.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절차, 자료 요청 등의 사항을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펴. 체납가산금의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체납된 금액에 부가할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정함

허.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통계 구축, 자료제공 요청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고. 지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지도·감독·관리 대상, 계획 수립,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

노.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함

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 산림청장 및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범위를 정함

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보.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임가

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의 품목(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한다)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는 예외로 한다.
2. 제2조의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임업인

나.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 임산물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임산물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급 제외 예외 조건) ① 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이 보유한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자로서 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계속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자가 해당 산지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본인이 보유한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 생산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임가(제3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범위와 같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6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

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산림청장이 정하는 토양화학성분 및 비료사용 기준

제15조(교육 이수)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들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들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별표 3의 산지를 말한다.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임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도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어느 하나의 주된 시·군과 연접한 시·군의 산지로 한정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이면서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이거나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제19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

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6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하 “산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제23조(입목의 유지)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5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25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채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읍·면·동장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등록, 변경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

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1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파목에 따른 준수사항
다.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라. 법 제16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카목에 따른 준수사항

마.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
 - 나.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11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 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16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 바.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비치 의무(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

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9.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

10.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1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항 제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관련)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가. 임가 내 모든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라 한다)의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다.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라. 임가 내 모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마.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바.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 사.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채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일 것
 - 아.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
 - 가.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 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란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농촌지역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농촌지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제1호나목·다목 및 사목에 따른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 산정방법,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채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확인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별표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가.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 나.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다. 하천수의 사용·관리(임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을 준수할 것
- 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 마. 퇴비·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퇴비액비 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 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아.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유해물질 중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 차.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타.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할 것
- 파.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별표 3]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별표 4]

육림업의 입목의 유지기준(제23조 관련)

1.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ha당 적정 그루 수

종	가슴높이 지름(cm)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273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298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438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528
소나무(충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528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533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664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435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2. 기준의 적용원칙

가.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림 후 2년 이내 : 생존율 80퍼센트 이상

2) 조림 후 2년 초과 : 조림 후 잔존 그루 수 비율 60퍼센트 이상

나.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침엽수는 잣나무,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다.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단, 위 표의 가슴높이 지름을 초과한 산림의 경우 입목 그루 수가 수확벌채 시 최소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라. 혼효림의 경우 혼효율에 따른 적정 그루 수를 계산

마.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으로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부터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산불·산사태는 면적, 병해충은 나무그루 수로 피해율을 산정

3. 조사방법

가.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400㎡/개소)를 조사하여 산출

나. 표준지는 3ha 이하인 경우 1개소, 3ha 초과 10ha 이하 3개소, 10ha 초과 4개소로 하며, 표준지 내 입목은 청색 페인트 또는 청색 마킹테이프로 표식

[별표 5]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24조 관련)

1.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가.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 나.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다. 하천수의 사용·관리(임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을 준수할 것
- 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 마. 퇴비·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퇴비액비 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 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아.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차.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할 것
- 카.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별표 6]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다목부터 파목은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마목부터 카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 또는 등록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제2호마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임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 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
3)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
4) 법 제8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 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 하여 육림업 직접지 불금 전부 미지급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육림업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 하여 육림업 직접지 불금 전부 미지급	-
4) 법 제14조제3항제3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마. 법 제11조제1호 또는 제16조제1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 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 하여 공익직접지불 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산지분에 대 한 공익직접지불금 은 1차 위반 시 10 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공익직접지불금은 1 차 위반 시 10퍼센	-

위반한 경우		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바. 법 제11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농약을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또는 임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임산물의 유통·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화학비료를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1조제3호 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1조제4호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임산물생산업	-

자. 법 제16조제2호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1) 제22조제1호에 따른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제22조제2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차. 법 제16조제4호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카. 법 제16조제5호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

		각각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타. 법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5호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6호	해당 산지분에 한정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별표 7]

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28조제2항 관련)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에 관한 자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자료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자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제71조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출하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자료
10.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 및 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1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1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 및 농약 판매에 관한 자료
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에 관한 자료

17.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배출 등 금지, 방제조치 및 방제조치 이행 명령에 관한 자료
1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에 관한 자료
20.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비료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자료
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자료
2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2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4.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자료
2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임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7.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28.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
29.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30. 「산지관리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에 관한 자료
3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자료
3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
35.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9.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1.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4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3.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4.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4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자료
47.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4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50.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51.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정보
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5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55.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에 관한 자료

5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5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지급에 관한 자료
 60.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61.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관한 자료
 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관한 자료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급여의 결정에 관한 자료
 66.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에 따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67. 그 밖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료
- 비고: 제2호(가축분뇨), 제17호(물환경보전), 제21호(생물다양성), 제24호(식물방역), 제28호(지하수), 제34호(폐기물) 및 제35호(하천법)의 자료의 범위에는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가중 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연 락 처	(042) 481 - 1248